

충청북도소방서 설치조례증 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

기획경제위원회  
전문위원

##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증개정조례(안)

###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7. 6. 12

나. 회부일자 : '97. 6. 12

3. 제안이유

○ 음성지역의 각종 공단조성 및 도시규모 확대 등으로 소방수요  
가 급증함에 따라 음성소방서를 신설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 
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제2조 관련 “별표”(충청북도 소방서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)  
에 음성소방서를 신설하고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 
594-114로 하고 관할구역은 음성군 일원으로 하며, 충주소방서  
의 관할구역에서 음성군 일원을 삭제함.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소방서의 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
이는 음성지역의 각종 공단조성 및 도시규모 확대 등으로 소방수  
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 
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음성지역을 관할하는 소방  
서를 신설하고자 함이며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  
에 의거 '95년 5월에 소방관서 설치승인을 받은 사안이고 음성소방  
서 시설물의 완료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  
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